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공소시효 만료 50일 전!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 일시 : 2022.2.7.(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 사회 :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박래군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4.16재단 상임이사]
- 발언1 : 이정일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단장)]
- 발언2 :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허재용 가족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발언3 : 이상진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승렬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4.16연대 공동대표]
 - 나승구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 /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 질의 응답
- 기자회견 종료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 제출

1.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2022년 2월 7일 11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 고소·고발인 1,166명의 연명을 받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고소·고발장 제출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관련 첫 번째 고소·고발입니다.

2. 고소·고발을 하는 이유

- (1)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는 성과주의의 그늘에서 탐욕에 눈이 먼 기업과 이들을 눈감아주었던 국가의 방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만 5년이 되도록 침몰의 책임자들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2) 50일 후 3월 31일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 이 되는 날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지난 5년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을 밝혀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국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채 이윤추구만 좇은 국내 해양업계에 경종을 울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은 많은 시행착오로 침몰원인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사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 일부 범죄는 50일 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 (3) 이에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은 국민고발인 1천명 이상의 연명으로 국민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고소·고발 내용 및 향후 계획

- (1) 대표고소인 허영주 외 4인과 대표고발인 박승렬 외 1,160명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고발인을 「별첨」과 같이 특정하였습니다. (※ 별첨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 (2) 이번 국민 고소·고발은 피고소·고발인을 플라리스쉬핑 임직원과 한국선급 검사원으로 한정하여 1차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3)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이번 고소·고발의 피고소·고발인들뿐만 아니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관련자들에 대하여 계속 법리검토를 하여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자 회견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공소시효 만료 50일 전!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 기자회견 : 2022.2.7.(월) 오전 11시 /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지 5년이 되었다.

한 어머니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22명의 선원들이 실종된 이후, 침몰의 이유라도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고소인들에게 5년이라는 세월은 마치 영겁 같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이 밝혀지지는커녕, 누구 한 명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했던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또렷하게 눈에 보이는 선원 유해를 버려두고 돌아오는 패륜을 저질렀고, 2차 심해수색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기획재정부의 높은 벽 앞에 3년째 가로막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의 심해수색 추진 여부만을 눈치 보면서 5년 동안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 틈을 타서 참사의 주범이자 스텔라데이지호의 소유주인 플라리스쉬핑은 침몰 보험금을 종잣돈 삼아서 매년 영업이익의 최대기록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문제는 50일 후 스텔라데이지호를 침몰시킨 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들은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에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은 작금의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국민 고소·고발인 1,166명의 뜻을 모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국민 고소·고발인 1,166명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우리의 이웃들이다. 이들은 안전하게 퇴근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권이며, 죄지은 자는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정의를 기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그저 몇몇 선원들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해운업계의 탐욕과 이를 방관한 국가의 직무유기가 맞물린 지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이다.


따라서 국민 고소·고발인 1,166명은 대한민국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민 앞에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부산지방검찰청에 플라리스슈핑의 임직원들과 한국선급의 검사원들을 고소·고발하였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얼마나 성의있게 수사하고 기소하는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검찰의 태도를 기대한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비록 검찰의 기소는 지난한 법정 다툼의 시작에 불과할지라도 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2022년 2월 7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 별첨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보도자료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관련 국민 고소·고발]

고소·고발장 개요

1. 고소·고발인과 대리인 현황

- 고소인의 지위 --- 피해자 가족 (5)명
- 고발인의 지위 --- 박승렬 외 1160명
- 대리인단 이정일 변호사 포함 (4)명

2. 고소·고발의 대상 범위: 총 9명

-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임직원
 - (1) 김완중(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 (2) 한희승(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 (3) 김춘만(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해사본부장)
 - (4) 노용래(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영업본부장)
 - (5) 하은태(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전용선팀장)
 - (6) 변인한(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공무감독)
 - (7) 박정준(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공무감독)
 - (8) 정원화(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안전관리실장)
 - (9) 김상래(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안전품질팀 부장)
 - (10) 설천수(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공무감독)
 - (11) 성명불상(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임·직원)

- 사단법인 한국선급 소속 검사원

- (1) 문경빈(한국선급 검사원)
- (2) 윤한호(한국선급 검사원)

3. 피고소·고발대상 행위와 죄명

-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플라리스쉬핑 주식회사 형사책임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부분(형법 제189조, 제187조)

- (1)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스텔라데이지호가 복원성 자료상 격창적재 상태의 운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복원성 자료와 달리 격창적재 상태로 스텔라데이지호를 운항하게 하고,
 (2)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출항 정지 등을 우려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1번, 3번, 5번 좌·우현 평형수 탱크의 부식으로 인하여 쇄모가 진행되어 폐선 우선 선박 4순위로 지정된 스텔라데이지호를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선원 24명이 현존하는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 3. 31. 13:20경(현지시각) 브라질국 리우 데자네이루 남동방 약 1,500해리 인근의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선체 결함 및 화물의 격창적재로 인해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케함

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 (형법 제268조)

- (1) 복원성 자료상 격창적재 상태의 운항이 허용되지 않는 노후된 스텔라데이지호를 운항하여 지속적으로 화물을 운송케 한 업무상 과실,
- (2) 선박안전법상 복원성유지의무 위반, 결함 신고의무 위반 등의 업무상과실,
- (3)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직후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직무상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
- (4)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 등에 규정된 근로자의 생명·신체 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에 따른 업무상과실 등이 겹쳐져, 2017. 3. 31. 스텔라데이지호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피해자 22명이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

다. 피고소인들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해진해운 선사 판결에서 청해진해운 선사 임·직원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세월호를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판단한 바 있음

이 고소·고발 사건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라는 결과가 발생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과 선사의 보고·결재 라인을 통하여 이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함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 평가 가능함

□ 사단법인 한국선급 소속 검사원

문경빈과 윤한호는 한국선급 검사원으로, 2016. 8. 12. 스텔라데이지호 연차검사 당시 실제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5번 화물창 모두 정상(Fair Condition)’ 이라고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검사를 통해 선박 침몰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인데, 이는 한국선급의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고소·고발을 하는 이유

- (1) 특히, 고소인들은 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로 인해 실종된 선원들의 가족들이자, 위 참사의 피해자로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며, 고소인들은 위 참사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그 원인을 제공한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가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임.

- (2)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야 할 대한민국 검찰은 일부 책임자의 선박안전법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 선원들의 사망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부분과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를 하지 않았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9. 2. 각종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3)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부분의 공소시효가 1개월 채 남지 않았고, 선원들의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희생자 가족들은 책임자들이 면책될 가능성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수사과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 고소·고발하게 된 것임**

- (4) 앞으로도 고소인들은 이번 고소·고발의 피고소·고발인들뿐만 아니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관련자들에 대하여 계속으로 법리검토를 하여 필요하면 추가·고소·고발을 할 예정임. 끝.